

제1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 1 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일반

제 2 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제 3 장 선거기사심의기준 관련 법규 개정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일반

1. 설치근거 및 기간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사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 2006년 5월 31일) 기사심의위원회는 2006년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0일동안 운영됐다.

2. 구 성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한국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각 1명의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한국언론학회는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 대한변호사협회는 하창우 변호사, 한국신문협회는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이경일 겸임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이명순 공동대표, 열린우리당은 박구진 변호사, 한나라당은 송실대 법학과 강경근 교수 등을 각각 추천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각 추천된 사람에 대해 당적 보유 여부 및 기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들 6인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유효봉 위원, 노향기 위원, 안병준 위원 등 모두 9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6년 1월 31일 제1차 회의 겸 발족식을 개최하여 호선에 의해 유효봉 위원을 심의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3. 기 능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일조한다. 또한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반론보도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방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역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운영방침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경고문 게재결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개정(2004. 10. 26.)을 통해 심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결정 유형으로 명문화됐다.

한편,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론조사결과 보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선거기사심의기준 관련 조항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거판세를 분석하는 보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해당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심의했다.

결정유형별로 심의위원회 운영방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문 게재결정'은 선거법상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죄 광고는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1991년)에 따라, 그 행사를 자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둘째,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은 해당 선거기사가 명백한 오류로 밝혀져 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참고하여 명백한 오류로 판명된 기사내용에 한해 정정보도 게재결정을 내리는 등 해당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셋째, '경고문 게재결정'은 실효성이 낮은 '사과문 게재'와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대체하여 2004년 총선 기사심의위원회에서 새로 도입하여 2004년 10월 26일 규칙이 개정되면서 명문화된 결정유형이다. 이는 주의나 경고 등의 비공개결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체심의에 의한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동일한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거나 특정 후보를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현저하여 불공정성이 특히 심한 경우 등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넷째, '반론보도문 게재결정'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정정보도문 게재결정'과 달리 신청인에 대한 반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취할 수 있는 결정유형이다. 따라서 여타 심의·의결절차보다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정당(중앙당)과 언론사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만 심의위원회로의 회부가 가능한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제도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사의 사실관계가 어긋나지는 않았으나 신청인에 대한 반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 등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조건 심의에서도 해당 결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섯째, 자체심의를안건에 적용하는 결정유형으로는 '경고', '주의'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칼럼을 게재한 경우, 후보자의 저술광고를 게재한 경우 또는 선거일전 6일부터 여론조사결과공표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주의' 결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보도요건을 미비한 채 결과를 공표하였거나 특정 후보를 부각 보도한 경우 등에 의결하였다. 또한 2004년 10월 26일 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권고' 결정은 '경고' 및 '주의' 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의결된 예는 없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든 후보자들을 동등하게 다루지 않고 소수의 유력 후보자만을 다룰 경우 보도시

가. 자체심의

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불공정보도의 경우 위반 수위에 따라 사과문·정정보도문·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의결한다.

자체심의를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 전문 모니터요원 및 실무팀이 일간신문, 주간신문 및 주간지, 월간지 등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도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안건에 대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제재수위를 달리하여 결정사항을 의결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해당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시정요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의결한다. 시정요구 역시 자체심의와 같은 절차에 의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및 언론사는 1회에 한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당(중앙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그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단, 기사게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게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반론보도문에 대해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측 모두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해당 언론사)에게 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 및 언론사는 1회에 한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처벌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따르지 않은 언론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처해진다.

3. 기사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불공정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입각하

여, 2006년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0일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에 따라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자체심의 53건을 의결하였고, 시정요구 25건과 반론보도청구회부 2건 등 총 80건을 처리하였다. 자체심의의 구체적 결정유형으로는 경고문 게재 6건, 경고 30건, 주의 17건 등이고, 시정요구의 경우 정정보도 게재결정 1건, 반론보도 게재결정 1건, 경고와 주의가 각 2건, 기각 4건, 취하 15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경우 인용과 기각 결정 각 1건씩이었다.

가. 자체심의

심의위원회는 자체 구독한 각종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하여 경고문 게재 6건, 경고 30건, 주의 17건 등을 결정하였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1건(58.5%)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와 ‘외부기고 제한 위반’이 각 10건(18.9%)이었으며,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과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각 1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가 33건(62.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역주간신문 12건(22.6%), 중앙일간지 7건(13.2%), 월간지 1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타 매체에 비해 지역일간지의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나. 시정요구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25건의 시정요구가 접수되어 ‘정정보도 게재결정’과 ‘반론보도 게재결정’ 각 1건, ‘경고’와 ‘주의’ 각 2건, ‘기각’ 4건, ‘취하’ 15건 등으로 처리되었다. 이 가운데 취하된 15건은 시정요구 접수 이후 시정요구인에 대한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 등이 게재되었거나, 시정요구인이 해당 절차 이외의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의 이유로 취하가 이루어졌다. 매체별 현황으로는 지역일간지와 지역주간신문이 각 10건(40%)이었고, 중앙일간지에 대한 시정요구는 5건(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반론보도청구회부

반론보도청구회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처음 설치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기사심의위원회 운영 당시 1건이 회부된 이후,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등 세 차례에 걸쳐 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한 건도 회부되지 않았다. 이번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에는 2건의 반론보도청구가 회부되어 각각 인용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처럼 반론보도청구회부 제도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언론사를 필수적으로 경유하여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함께, 후보자들이 해명의 강도가 낮은 반론보도보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정정하기 위해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등의 게재를 청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자체심의 대상매체

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에서 발행되는 7900여종의 정기간행물 가운데, 구독이 가능하고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할 개연성이 높은 중앙일간지 26종, 지역일간지 69종, 시사주간지 및 주간신문 286종, 월간지 7종, 뉴스통신 2종 등 총 390개 매체를 심의대상으로 삼았다. <표 2·3·4>¹⁾

심의대상 매체별 현황으로는 일간지 95종, 시사주간지 및 종합주간신문 21종, 월간지 7종, 지역주간신문 265종, 뉴스통신 2종 등이다.

이를 발행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15종(일간지 26종, 시사주간지 8종, 종합주간신문 13종, 지역주간신문 59종, 시사월간지 7종, 뉴스통신 2종), 부산 4종(일간지 2종, 지역주간신문 2종), 대구 7종(일간지 4종, 지역주간신문 3종), 인천 6종(일간지 3종, 지역주간신문 3종), 광주 12종(일간지 11종, 지역주간신문 1종), 대전 5종(일간지 5종), 울산 5종(일간지 3종, 지역주간신문 2종), 경기 50종(일간지 16종, 지역주간신문 34종), 강원 12종(일간지 2종, 지역주간신문 10종), 충북 21건(일간지 5종, 지역주간신문 16건), 충남 20종(지역주간신문 20종), 전북 22종(일간지 6종, 지역주간신문 16종), 전남 38종(일간지 1종, 지역주간신문 37종), 경북 29종(일간지 3종, 지역주간신문 26종), 경남 37종(일간지 4종, 지역주간신문 33종), 제주 7종(일간지 4종, 지역주간신문 3종) 등이다.

자체심의 대상 매체 현황

■ 일간지 95종 (중앙일간지 26종, 지역일간지 69종)

〈표 2〉

발행지	매체명
서울(26)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시민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헤럴드경제,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칸, 스포츠한국, 일간스포츠, 더데일리포커스, 데일리썬, 메트로, 에이엠세븐
부산(2)	국제신문, 부산일보
대구(4)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인천(3)	경도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광주(11)	광남일보, 광주매일, 광주일보, 남도일보, 대한일보, 무등일보, 서남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일보

1) 그동안 舊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공직선거법」으로 법령 변경)」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매체는 舊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한다)」상의 '정기간행물'로 규정되어 있었고, 정간법상 '정기간행물'은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로 정의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5월 29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하 '뉴스통신법'이라 한다)」의 제정과 함께 뉴스통신이 정간법상의 정기간행물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 바,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뉴스통신에 대한 심의기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뉴스통신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문문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뉴스통신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비록 뉴스통신이 외형적으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이탈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뉴스통신법을 제정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정비하지 않아 야기된 문제 즉, 입법상의 과오로 발생한 문제라는 점, 뉴스통신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면 공정한 선거보도 및 심의에 관한 후보자 및 유권자의 신뢰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뉴스통신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언론사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법문대로 해석할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 그 어느 기관에서도 뉴스통신을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등을 고려하여 뉴스통신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일단 뉴스통신을 자체심의 대상으로는 포함시켰으나 적극적으로 심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동안 뉴스통신에 대한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나 반론보도청구회부도 없었다.

발행지	매체명
대전 (5)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남일보, 중앙매일, 충청투데이
울산 (3)	경상일보, 광역일보, 울산매일
경기 (16)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내외일보,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아시아일보, 우리일보, 중부일보, 전국매일, 투데이뉴스, 현대일보
강원 (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북 (5)	동양일보, 새충청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한빛일보
전북 (6)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남 (1)	전광일보
경북 (3)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남 (4)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제주 (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 주간지 및 월간지 28종 (시사주간지 8종, 종합주간신문 13종, 월간지 7종)

〈표 3〉

구분	매체명
시사주간지 (8)	뉴스메이커, 시사저널,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한겨레21, 매경ECONOMY, ECONOMIC REVIEW
종합주간신문 (13)	대한저널, 미래한국, 민주신문, 시민운동연합신문, 시민의신문, 시사뉴스, 시사포커스, 오마이뉴스,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시사월간지 (7)	말,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한국논단, 여성동아, 여성중앙

■ 지역주간신문 265종 (서울 59종, 지역 206종)

〈표 4〉

	매체명
서울 (59)	강남내일신문,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신문,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신문, 구로타임즈, 금천뉴스, 금천신문, 노원신문, 뉴스 in 강서양천,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성동신문, 성북신문, 양천신문, 영등포신문, 용산신문, 21은평News, 종로신문, 종로저널, 주간 강남신문, 주간 강동신문, 주간 노원우리신문, 주간 동북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서대문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은평신문, 주간 중랑신문, 지역내일신문 23개(강북, 강남서초, 거제통영, 광주, 구미, 대구, 대전, 마산창원, 부천, 부평계양, 분당성남, 수원, 안산, 안양, 양천, 용인, 울산, 원주, 익산, 일산, 진주사천, 천안, 해운대)

	매 체 명
부 산 (2)	부산여성신문, 영도신문
대 구 (3)	대구달성신문, 대구푸른신문, 팔공신문
인 천 (3)	경인열린신문, 남동신문, 연수저널
광 주 (1)	시민의소리
울 산 (2)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경 기(34)	고양신문, 고양파주자치신문, 과천시대신문, 군포신문, 김포뉴스, 김포신문 동부교차로저널, 미래신문,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포커스, 세종신문 수원신문, 시흥자치신문, 시흥 참여론 21, 안산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양광역신문, 안양시민신문, 양주신문, 양평백운신문, 양평신문, 여주신문 연천저널, 용인시민신문, 용인신문, 이천설봉신문, 이천신문, 자치안성 파주저널, 평택시민신문, 포천신문, 한아름뉴스, 화성오산신문
강 원(10)	강릉신문, 강원리뷰, 강원신문, 삼척동해신문, 설악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태백신문, 한중신문, 홍천신문
충 북(16)	괴산중평신문, 목요신문, 보은미래신문, 삼군신문, 영동신문, 옥천신문 음성뉴스, 음성신문, 제천신문, 주간 예성신문, 진천군민신문, 진천시사신문 진천신문, 충북뉴스, 충주신문, 충청리뷰
충 남(20)	공주신문, 금산신문, 금산저널, 뉴스서천, 뉴스청양, 당진시대, 만빛신문 무한정보신문, 백제신문, 보령신문, 보령시민신문, 서천신문, 연기신문 예산신문, 온양신문, 우려키장당진뉴스, 충남시사신문, 천안신문, 청양신문 홍성신문
전 북(16)	고창신문, 고창코리아, 군산미래신문(舊 군산타임즈),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완주신문 익산신문, 임실신문, 전북일요시사, 정부고신문, 정읍신문, 진안신문
전 남(37)	격주간 담양신문, 격주간 만연신문, 고흥타임즈, 곡성신문,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남도 문화저널, 담양주간신문,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새여수신문 순천시민의신문, 여수로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광신문, 예향진도신문 완도타임즈, 장성군민신문, 장성닷컴신문, 전남타임즈, 정남진 장흥신문 주간 강진신문, 주간 고흥신문, 주간 나주신문, 주간 순천신문, 주간 영광신문 주간 완도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주간 해남신문, 주간 해진신문 주간 화순신문, 진도신문, 진도타임즈, 청해진신문, 향도신문
경 북(26)	경북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고향신문, 군위신문, 김천신문, 삼백신문, 상주시민신문, 상주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영남신문, 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영천시민신문, 예천신문, 울진신문, 울진21, 의성신문, 청도신문, 칠곡신문
경 남(33)	거제중앙신문, 거제신문, 거제통영고성타임즈, 거창신문, 경남여성신문 경남우리신문, 경서신문, 고성신문, 김해신문, 뉴스함양, 남해신문, 미리별신문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사천신문, 새거제,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주간아름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신문, 진주신문, 진해신문 창녕신문, 통영신문, 하동신문, 함안군민신문, 함안아라신문, 합천신문 황강신문, Weekly경남
제 주(3)	뉴스시제주, 서귀포남제주신문, 제주여성신문

■ 뉴스통신 2종 (뉴스시, 연합뉴스)

제3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법규 개정

1. 공직선거법

가. 경과사항

舊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개정·공포되면서 「공직선거법」으로 법령이 변경되고,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이 축소되었다.

나. 개정내용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축소하였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 - -. ②~④ (생략)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 - -. ②~④ (현행과 같음)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가. 경과사항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경고문 게재결정’을 2004년 10월 26일 규칙 개정을 통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결정유형으로 명시하였다.

나. 개정내용

자체심의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과문 게재결정’과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을 대체할만한 수단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기사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마련한 ‘경고문 게재결정’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결정유형임을 명시하였다.

개 정 전	개 정 후
제12조(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12조(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같음)

3. 선거기사심의기준

가. 경과사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2006년 1월 31일자로 선거기사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입법 취지를 살려 해당 조항을 6월 26일자로 재개정하였다. 또한 게재가 제한되는 기고문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게재가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나. 개정내용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에서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로 축소됨에 따라 1월 31일자로 선거기사심의기준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6월 26일자로 재개정하여 공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여론조사 유형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게재를 제한하는 후보자에 의한 기고문의 범위를 '칼럼이나 저술'로 확대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홍보목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기고문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게재를 허용하기로 개정하였다.

1 차 개 정 (06. 1. 31.)	2 차 개 정 (06. 6. 26.)
제8조 (여론조사 보도) ①언론사는 <u>선거일전 6일부터</u>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 - -. ③~⑤ (생 략) 제11조 (외부기고) ① (생 략) ②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u>칼럼</u>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여론조사 보도) ① - - - <u>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⑤ (현행과 같음) 제11조 (외부기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u>칼럼이나 저술</u>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u>다만,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